

# 생활체육위원회 규정

제정 2023. 11. 16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대한럭비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생활체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·조사하고 이사회 의사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사업 운영에 대해 자문한다.

1.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생활체육의 진흥 방법에 관한 사항
3. 생활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
4. 생활체육행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
6.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7. 생활체육행사 진행 운영 및 지원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약간 명
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4.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생활체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7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총회 기준으로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 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회의 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0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2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칙<2023.11.16>

**제13조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